성과공유제 이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ONTENTS

01 성과공유제 소개

02 과제등록 및 과제확인 절차

03 세부 과제 안내

① 다자간 과제

② 다년 과제

③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과제(공공부문)

04 성과공유제 FAQ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1 성과공유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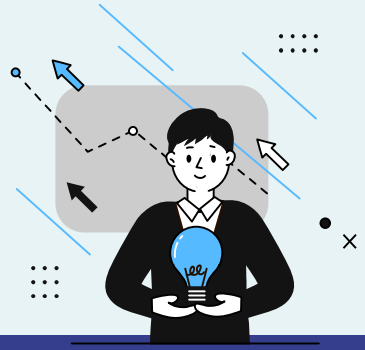

1. 성과공유제의 개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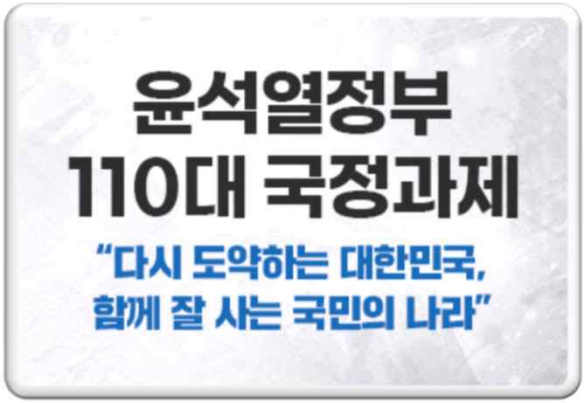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확산(국정과제 33번)

»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성과공유제란?

수·위탁기업 간 공동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1. 성과공유제의 개념(2/2)

위·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
대기업, 공기업, 중견·중소기업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수탁기업
중견·중소기업

위탁기업에게 위탁을 받은 자 (중견·중소기업)

수탁기업 인정 범위

위탁기업 → 수탁기업

수탁기업 불가
- 대기업, 공공기관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
- 비영리 법인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협력활동 목표합의

제안방식
- 위탁기업 제안형
- 수탁기업 제안형

협력유형 합의
- 신제품 · 신기술 개발
- 원가 및 비용 절감
- 성능 · 공정 개선
- 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전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 위·수탁기업 공동노력
- 성과의 공유방법

계약서 등록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성과공유

성과공유의 방법★
- 현금배분
- 물량 · 매출 확대

성과의 공유 증빙
-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 단가합의서, 수의계약서
- 이체확인서 등

3. 성과공유의 인정유형(1/2)

현금배분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 또는 투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① 현금보상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인센티브 등 현금으로 지급

② 투자비용보상

과제수행에 투입된 협력사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③ 단가반영

과제수행에 따른 개선효과(원가절감액 등)를 최종 단가에 반영한 것으로 단가 반영분에 대해서만 현금배분으로 인정

3. 성과공유의 인정유형(2/2)

물량·매출확대

수탁기업의 납품 제품 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 등

① 구매물량 보장

개발제품이나 발생성과에 대해 구매물량을 보장

② 물량확대

납품 제품의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

③ 수탁기업 매출확대

기술이전, 판로확보 등으로 발생한 수탁기업의 신규 매출

④ 수의계약(공공)

과제수행으로 인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1/8)

01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공사 / ○○○	**[HP SCR Reactor 개발]** • 기존 LTE 기술 대비 전력소비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한 IoT 기반 누수 감시 시스템을 개발, 20.6%(목표치 15% 초과달성) 원가절감 달성 **공동**: (위탁) 단양수도센터 실수용가(100개소) 테스트베드 제공 및 성능 검증 등 **노력**: (수탁) 생산 공정·경영 개선, 현장 제품설치(100개소) 및 누수탐지 수행 등 (성과공유) 수의계약을 통한 물량매출확대(1.1억원) • 추가 공유실적 : 국내 38억원, 해외 4.2억원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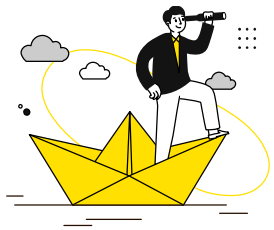

02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을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ㅇㅇ산업 / ㅇㅇㅇㅇ

[수출전용 제품출시를 통한 협력사 신규매출 창출]

- 수출전용 제품출시를 통한 협력사 신규매출 창출

공동	(위탁) 수출전용 제품 개발 지원, 글로벌 판로확대 수출인증 획득 지원
노력	(수탁) 수출전용 제품 개발 노력, 제품 생산 및 품질 / 수급관리, 수출인증 획득

(성과공유) 수출전용 제품출시를 통한 협력사 신규매출 창출(1.5억원)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3/8)

03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하는 유형

ㅇㅇ공사 / ㅇㅇㅇㅇ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 황연저감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한 성과공유

공동	(위탁) 연구성과물(특허권, 노하우, 개발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노력	(수탁) 기술사용료 납부, 연구성과물 개발 및 판매

(성과공유) 공동개발한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에 대한 물량매출확대(1.5억원)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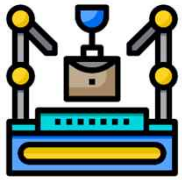

04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유형

○○건설 / ○○○	**[건설현장 골조공사 Pre-con 활동]** • 위수탁기업 간 Pre-con활동을 통해 최적의 시공계획 및 공법 도출
	공동: (위탁) 최적 설계안 도출, 변경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노력: (수탁) 설계 시공도면 완성, 기록관리, 금액 산출
	(성과공유) ㅇㅇ건설이 수탁기업 ㅇㅇㅇ과 외주계약 체결(93억원)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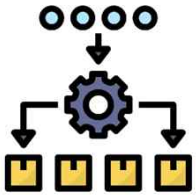

05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하는 유형

○○산업 / ○○○	**[열연공장 NO.2 Roll Grinder 개조,개선으로 성능향상]** • 열연공장 기존 부품(NO.2 Roll Grinder) 개조를 통한 성능향상
	공동: (위탁) 과제선정검토, 성과측정, 부품 개발비용 지원
	노력: (수탁) 기존 부품 개조, 시제품 개발
	(성과공유) ㅇㅇ산업이 수탁기업 ㅇㅇㅇ에게 투자비용 보상(6.2억원)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6/8)

06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유형

○○산업 / ○○○	[A/S부품 공급 효율화로 비용절감] • PMI품목 납입 리드타임 단축, 품목별 최적 발주팩터 적용	
	공동	(위탁) 품목별 소요량 예측정보 제공, 적정 발주팩터 운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노력	(수탁) 예측소요 기반 장/단기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
	(성과공유) 비용절감분에 대한 납품 단가에 1% 추가 반영 (2.5억원, 현금배분)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7/8)

07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유형

ㅇㅇ산업 / ㅇㅇㅇ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 지급] • ㅇㅇ산업은 건설시공, 설비 유지보수 및 생산, 품질 등 분야의 협력사를 연 2회 평가, 협력사 임직원에 인센티브 지급 * 생산성격려금과 안전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	
	공동	(위탁) 협력사(업종별) 기술력, 환경안전 등 직·간접 노력에 대한 평가
	노력	(수탁) 업종별 작업률 개선노력, SOP준수, 직원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등
	(성과공유) 평가에 따라 642.2억원 지급(197개사, 연간 합계)	

4. 성과공유제 대표 유형(8/8)

08

서비스 용역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하여 위탁기업의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서비스 품질제고, 비용절감등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유형

○○공사 / ○○○	**[2023년도 ○○지사 Buoy 관리용역 서비스 수준 향상]** • 안정적, 효율적 브이(**Buoy**) 운영관리 및 입·출하작업 서비스 수준 향상 * 「용역수행실적 평가지침」 기준 **85**점 이상 달성 목표	
	공동	(위탁) 해양시설 기술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근무공간 등 지원
	노력	(수탁) 부대시설 운영관리, 원유 입·출하 작업, 해양오염 방지·방제 등
	(성과공유) ○○공사가 ○○○과 수의계약 체결(**0.3**억원)	

5. 성과공유제 참여혜택(1/3)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실적(배점 4.0점 중 최대 3.0점)
  - (공공기관) 공공기관평가 배점 6점 중, 최대 4.0점(계량 1.5점, 비계량 2.5점)
- 공공기관(비계량) 및 지방공기업(0.5점) 경영평가 지표 반영
- 우수조달제품 신인도 심사 시 가점(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1점
- 건설업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평가 우대(대기업 최대 10점, 중소기업 최대 5점)

세제혜택

- 성과공유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 기부금 손금 인정(소득금액 10% 범위 내 전액 인정)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공제 (가중치 3배 인정)
  - 해당 출연금의 10% 법인세 세액공제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판로지원)

5. 성과공유제 참여혜택(2/3)

정부포상

-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성과공유제 포함)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수의계약 확인과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호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5. 성과공유제 참여혜택(3/3)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경기도 자체 제공 혜택

-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R&D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시 가점 부여
- ◆ 스타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 ◆ 경기도 기술개발(전략산업, 기업주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해외 통상촉진단 신청 시 가점 부여
-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
- ◆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시 가점 부여
- ◆ 기술닥터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 ◆ 해외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신청 시 가점 부여
- ◆ 해외G-Fair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02 과제등록 및 과제확인 절차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주의사항

1.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지침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공유제 관련 서식은 '21.6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과제등록·확인 등 과제 수행 시,
운영요령 및 지침 內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물품 구매나 시혜성 사업은 성과공유제 과제가 아닙니다.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이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및 용역 대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성과공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를 신청하시려면 위탁기업 내부 규정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를 신청하시려면 위탁기업에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지침)'이 있어야 과제수행이 가능합니다. 수탁기업 선정부터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입찰,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고 과제수행, 과제평가 등이 내부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에 따라 이행 되어야 합니다.

1. 과제등록 수행절차(1/5)

과제등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모두 시스템에 업로드 하였는가?
- ☑ 계약 체결일은 과제기간 전으로 사전계약 원칙을 지켰는가?
-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신청을 하였는가?
- ☑ 시스템상 체크리스트가 모두 "예"■ 표기되어 있는가?
- ☑ 수탁기업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였는가?

1. 과제등록 수행절차(2/5)

과제등록 절차

위탁기업

BENIS 로그인

위탁기업

과제 등록신청
(위탁기업)

· 성과공유계약서
· 사업계획서

협력재단(추진본부)

등록과제 심사

· 사전계약 체결 여부
· 과제수행기간 및 성과공유기간 설정
· 성과목표의 적절성
· 공유방식의 명확성 등

협력재단(추진본부)

등록승인

등록과제 확인증 발급

1. 과제등록 수행절차(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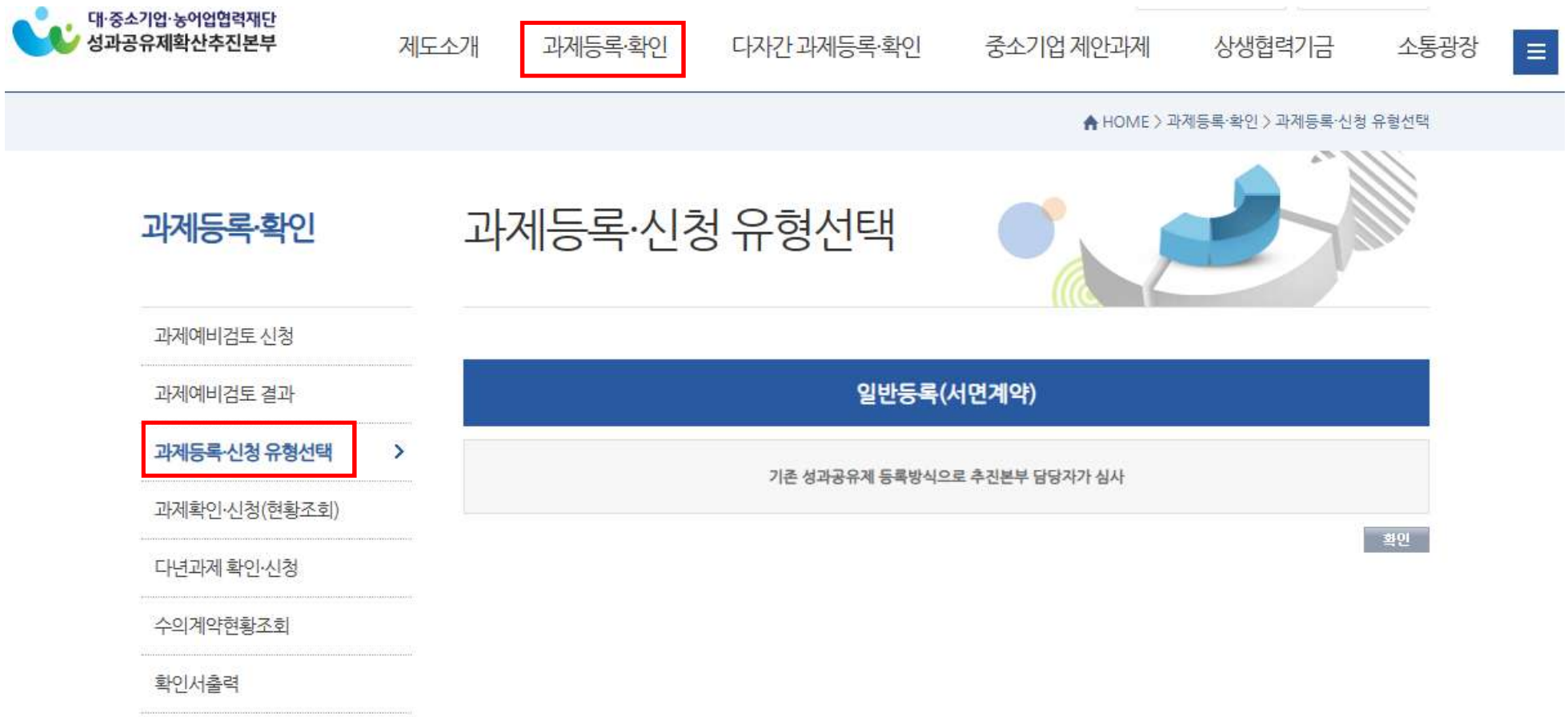

1. 과제등록 수행절차(4/5)

체크리스트

1.과제 설계 단계

구분	검토항목	예	아니오
1.신청자격	1-1. 도입기업 및 수탁기업이 신청대상 요건에 적합한가?		
	■ 도입기업(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기업체, 공공기관)	○	○
	■ 수탁기업(중소·중견기업)	○	○
	1-2.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였는가?	○	○
2.과제요건	[성과공유 계약서]		
	2-1. 성과공유 계약조건에 수탁기업의 불이익 조항이 없는가?	○	○
	2-2. 성과공유과제 계약서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과제목표가 명확하고 객관적 측정과 증빙이 가능한가?	○	○
	■ 공동노력 활동과 과제목표 간에 연계성이 충분한가?	○	○
	■ 성과공유방식이 직접적이고 공평하게 공유되는가?	○	○
	■ 과제기간이 성과공유기간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성과공유 사업계획서]		
	2-3. 사업계획서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과제의 필요성 및 목표가 명시되어있는가?	○	○
	■ 과제의 기대효과가 수·위탁기업에 모두 영향을 주는가?	○	○
	■ 과제명과 과제기간이 성과공유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
	■ 추진계획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	○
	■ 성과공유방식이 과제목표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	○
	■ 과제목표대비 성과의 정량적 측정 및 증빙이 가능한가?	○	○

2.과제 등록신청 단계

구분	검토항목	예	아니오
1.신청기간	1-1.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였는가?	○	○
	1-2. 과제기간 시작일 전에 성과공유과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
2.증빙서류	2-1. 다음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첨부)하였는가?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	○
	■ 사업계획서	○	○

체크리스트에 모두 "예"
라고 체크되어 있어야 과제
심사가 진행됩니다.

과제등록 전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과제등록 수행절차(5/5)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제 유형

☐	다년과제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제

계약 내용

위탁기업 정보	기업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자번호	107-82-10445	담당자명	배수현 / 담당자선택
	전화번호	- -	이메일	suh2266 @ naver.com
수탁기업 정보	사업자번호	① - - 수탁기업 가능여부 확인 ✓		
	기업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이메일	@
성과공유과제명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② 수의계약여부	성과공유 방식으로 수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만 예를 선택하세요.) ○ 예 ○ 아니오			
상생협력기금 활용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까? ○ 예 ○ 아니오			
기타 의견				

V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성과공유 유형 (해당 경보는 심사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선택하세요
③ 대외과제	선택하세요
④ 공유방식1	선택하세요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등 타 사업 연계 성과공유 과제인 경우 해당 사업 선택!

- 현금 배분
- 물량매출확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미비 시 확인서 발급이 거절될

첨부파일		추가
1. 성과공유 과제 계약서	찾아보기...	삭제
2. 사업계획서	찾아보기...	삭제
3. 첨부파일	찾아보기...	삭제

* 드래그 & 드롭은 Internet Explorer 10 이상에서 작동됩니다.

내 PC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오세요.

⑤ 계약서 등록

등록신청 완료

2. 성과공유제 등록 필수 서류_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확인 가능해야 함

1. 추진목적
2. 추진개요
3. 과제목표 평가방법
4. 구체적인 수행내용
5. 추진일정(계약서 상 과제기간과 일치)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필요

2. 성과공유제 등록 필수 서류_ 사업계획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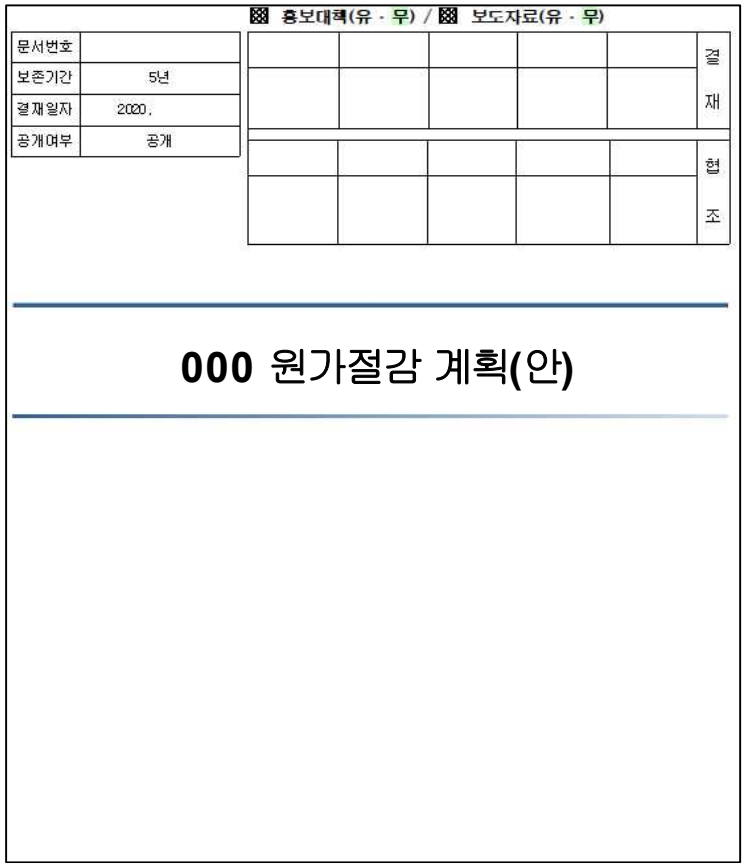

▩ 홍보대책(유 · 무) / ▩ 보도자료(유 · 무)

문서번호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0.
공개여부	공개

					결재
					협조

000 원가절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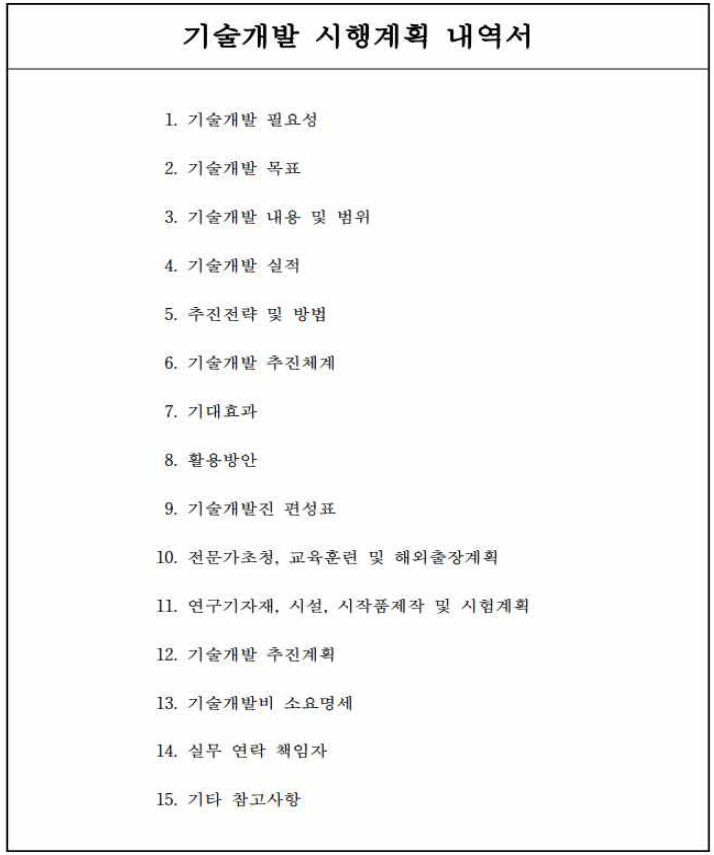

기술개발 시행계획 내역서

1. 기술개발 필요성
2. 기술개발 목표
3.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4. 기술개발 실적
5. 추진전략 및 방법
6. 기술개발 추진체계
7. 기대효과
8. 활용방안
9. 기술개발진 편성표
10. 전문가초청, 교육훈련 및 해외출장계획
11. 연구기자재, 시설, 시작품제작 및 시험계획
12. 기술개발 추진계획
13. 기술개발비 소요명세
14. 실무 연락 책임자
15. 기타 참고사항

2. 성과공유제 등록 필수 서류_ 표준계약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OOO 국산화 개발

☐ 과제기간 : 2023 년 9월 1일부터 ~ 2025 년 12월 31일까지(28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3 년 9월 1일부터 ~ 2024 년 10월 31일까지(14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4 년 11월 1일부터 ~ 2025 년 12월 31일까지(14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A공사 (대표자) AAA

수탁기업 : (기업명) B주식회사 (대표자) BBB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목표달성 여부 확인) 필요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심의위 평균 점수 90점 이상 시 성공 판정	정성	OOO 국산화 개발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달환경 확보

☐ 공동노력 : 위탁 · 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기술개발비 지원 시제품 테스트베드 지원 기술지원(자료제공 및 기술개발 협의)			
(수탁기업명)	제품 설계 및 제작 시제품 현장 검증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과제기간은
"과제수행기간+성과공유기간"이므로,
과제수행기간: 23.9.1~24.10.31
성과공유기간: 24.11.1~25.12.31
=>23.9.1~25.12.31

정량적, 구체적 목표 설정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위·수탁기업의 동등한 노력
(증빙 가능한 내용만 기재)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과제목표 달성 시 국산화 제품 구매(수의계약)				
공유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A공사 과(와) 수탁기업 B주식회사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년 8 월 30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A공사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AAA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B주식회사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BBB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현금배분: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성과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현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물량매출확대: 성과공유과제로 수행한 수탁기업의 해당 제품 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

과제 수행 전, **사전계약** 체결 준수
(과제기간 이전 또는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

2. 성과공유제 등록 필수 서류_ 표준계약서 작성 예시(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신제품·신기술·국산화 개발

(성과공유제 사례 1) 표준계약(안)

□ 과 제 명 : ○○○-○○○ 협력을 통해 ○○○○분야 '○○○○ ○○○○' 공동개발

□ 과제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20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4월 21일까지(12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8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A공사 (대표자) 000
수탁기업 : (기업명) B주식회사 (대표자) 000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 15% 절감	정성	▪ 수탁기업의 기술력 향상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 성능 평가 ▪ ○○○ 공급 ▪ ○○ 솔루션 제공 등 공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	
(수탁기업명)	▪ 설계지침 ▪ 설계 SPEC-IN ▪ ○○ 노하우 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물량확대의 경우] 개발에 따른 제조사의 판매량 확대 000만원 [현금배분의 경우] 공동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00% 현금지급	
공유 기간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	

[2] 성능·공정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성과공유제 사례 2) 표준계약(안)

□ 과 제 명 : ○○○○ 판매확대를 위해 수탁기업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공급으로 중소기업 원가 경쟁력 향상

□ 과제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20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4월 21일까지(12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8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A공사 (대표자) 000
수탁기업 : (기업명) B주식회사 (대표자) 000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 ○회 → ○회 ▪ ○○○○ ○% → ○% ▪ 약 ○억원 절감	정성	▪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 인력 및 개발비 지원, 현장점검, 공정개선 활동지원 ▪ 개발방향 및 기술규격 가이드 ▪ 개발품 테스트베드 제공 등	
(수탁기업명)	▪ 개발인력, 개발비(일부) 투입 ▪ ○○사용량 파악 및 분석, 공정개선 수행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물량확대의 경우] 개발에 따른 제조사의 판매량 확대 000만원 [현금배분의 경우] 공동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00% 현금지급	
공유 기간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	

2. 성과공유제 등록 필수 서류_ 표준계약서 작성 예시(2)

[3] 현금 등 인센티브 지급

(성과공유제 사례 3) 표준계약(안)

☐ 과 제 명 :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원가 경쟁력 향상

☐ 과제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20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2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4월 21일까지(12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까지(8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A공사 (대표자) 000
수탁기업 : (기업명) B주식회사 (대표자) 000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구분	S	A	B	C	정성	▪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향상
	점수	95	85	75	65		

☐ 공동노력 : 위탁 · 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 ○○ 제도 및 관련정책 운영 교육 ▪ 기계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 시스템 유무상 제공 ▪ 업체별 실적적평가, 역량평가 - 업체별 기술력, 개선노력, ○○ 등 ▪ 평가 및 심의화를 통한 평가등급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수탁기업명)	▪ ○○, 품질, ~ 관련 과제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 과제 수행관련 정보제공 및 평가 대응 등 협조 ▪ 법규 및 ○○규정 및 보안 준수, 시설관리 강화 ▪ 인적 역량강화 및 책임감 고취(교육참여 등)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급 S A B C 금액 000원 000원 00원 0원	
공유 기간	2023년 4월 22일부터 ~ 2023년 12월 21일	

[4] 서비스 용역 개선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협력사 ESG 컨설팅 및 관리체계 구축

☐ 과제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 2024년 4월 30일까지 (12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 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A사 (대표자) 000
수탁기업 : (기업명) B주식회사 (대표자) 000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협력사 ESG 가이드라인 준수율 20%p 향상	정성	ESG 경영 인식 개선을 통한 ESG 문화 확산

☐ 공동노력 : 위탁 · 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 ESG지원 사업 수행 ▪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ESG컨설팅 및 관리체계 구축 비용 지원	
(수탁기업명)	▪ ESG 교육 및 ESG 컨설팅 참여 ▪ ESG 관리체계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현금배분] ESG 컨설팅 수행후 ESG 리스크 평가지표, 평가기준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가 위탁기업의 ESG 가이드라인 준수율 20%p이상 개선하였을 경우 500,000지급	
공유 기간	2024년 1월 1일~ 2024년 4월 30일	

※ 성과공유 과제기간 및 성과공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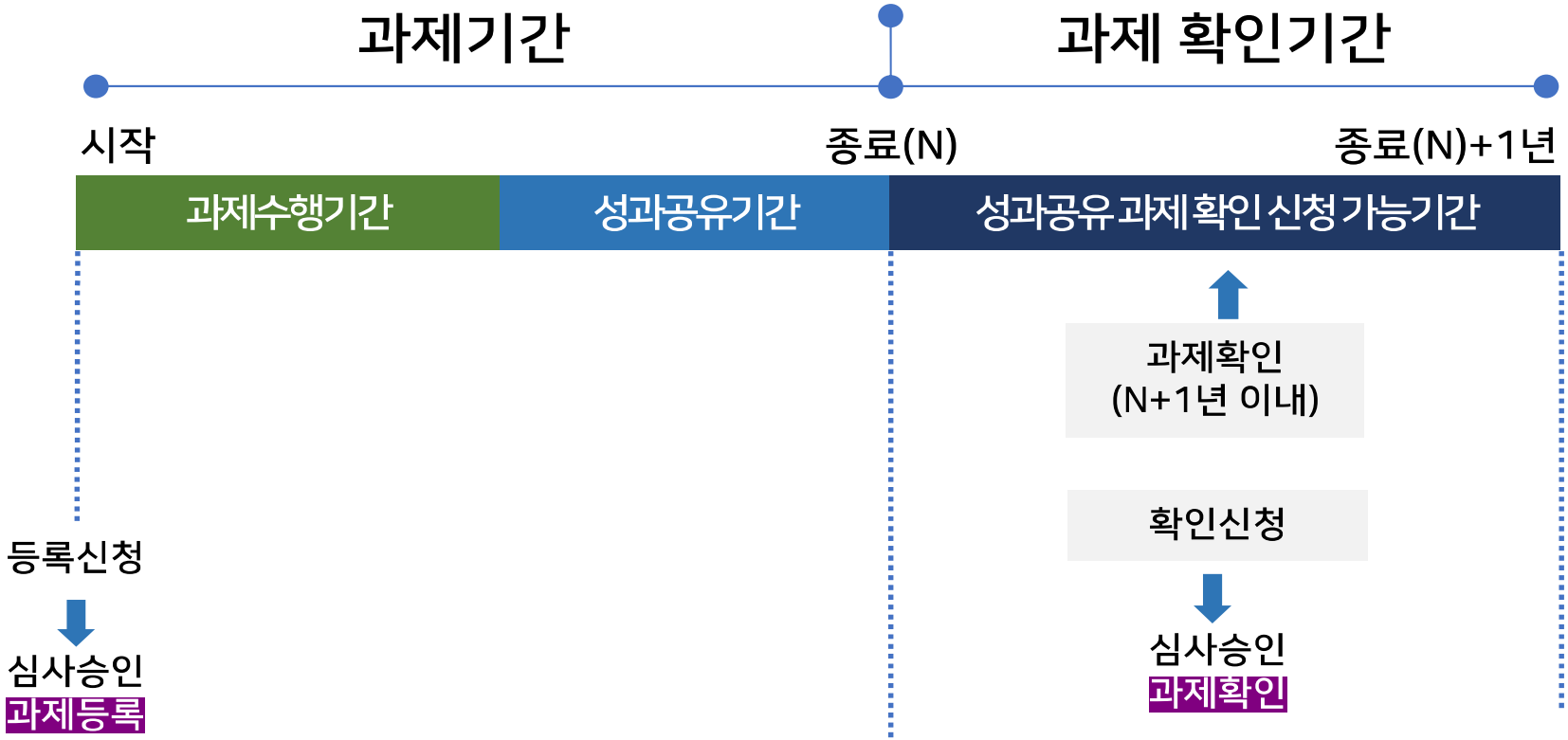

* 과제기간 내에 성과공유가 완료된 경우, 조기에 과제확인 신청가능

※ 등록과제 확인증 출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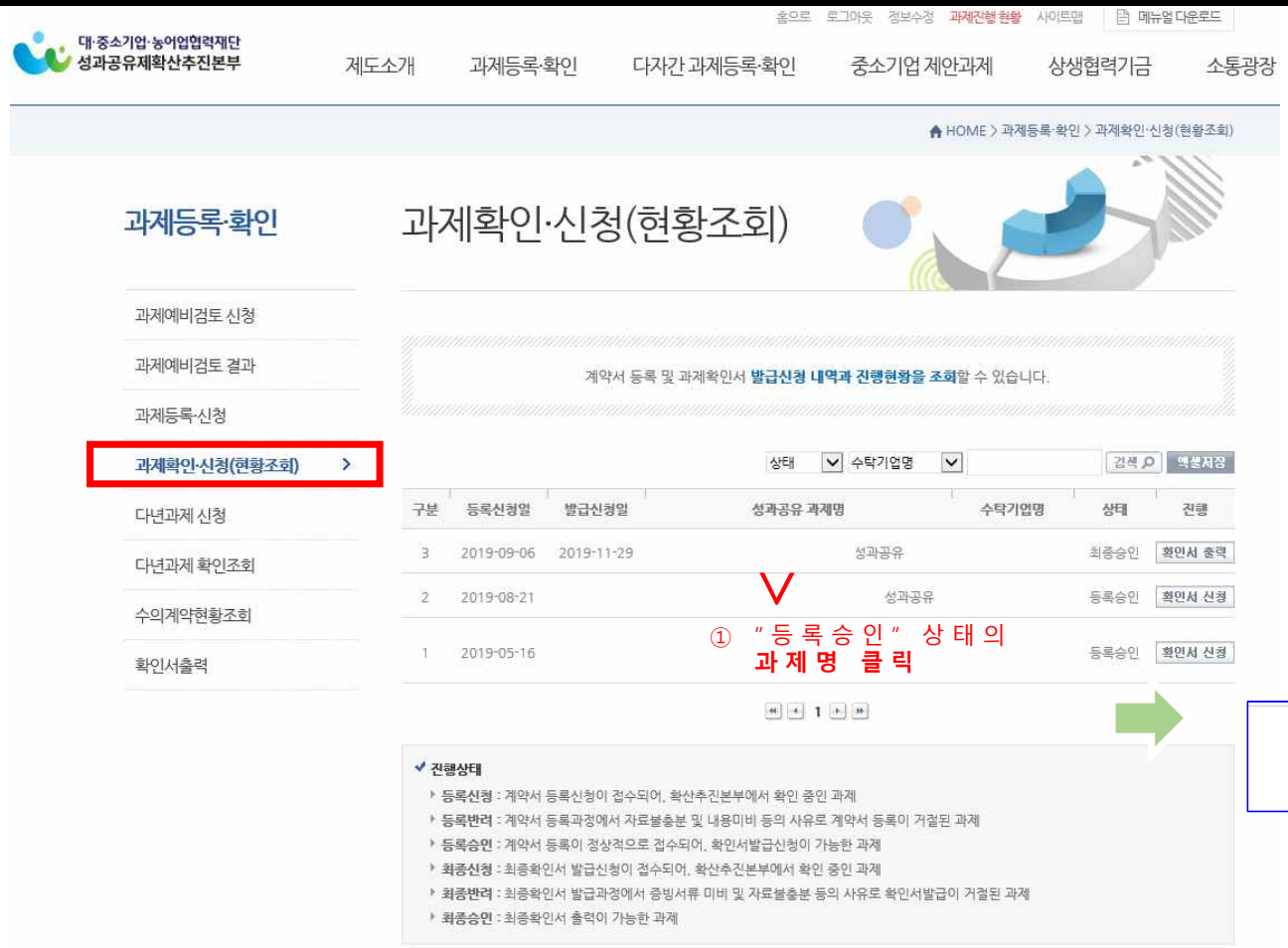

① "등록승인" 상태의 **과제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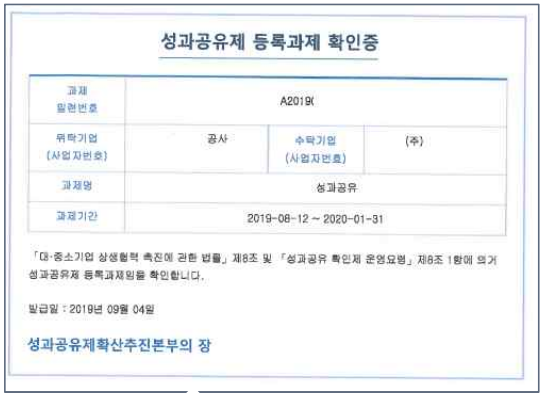

② 들어가서 하단에 등록과제 확인증 인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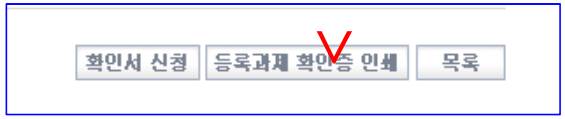

3. 성과공유과제 변경

성과공유 과제변경 신청서

과 제 명		
과제기간	20 . . . ~ 20 . .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수탁기업
과제목표		
변경유형	☐ 과제기간 변경 ☐ 과제목표 변경 ☐ 공동노력 역할 변경 ☐ 성과공유 방식 및 내용 변경 ☐ 계약당사자 변경 ☐ 기타(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신청기업 : (인)

위탁기업은 과제기간 중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제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진본부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하여 과제변경신청

① 성과공유 과제변경 신청서

②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

③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변경 내용 없는 경우, ①·②만 제출!

4. 과제확인 수행절차(1/4)

과제확인

수위탁기업

과제수행

수위탁기업

성과도출

수의계약 YES

수의계약 NO

수위탁기업

성과공유

과제 확인신청
(위탁기업)

· 목표달성 증빙서류
· 위수탁기업간 수행 내역
· 성과공유 증빙서류

협력재단(추진본부)

확인과제 심사

확인승인

과제확인서 발급

수의계약 체결 (공공)

수의 계약용 확인서 신청 → 서류확인 및 자료 보완 → 수의계약 현장실사 또는 서면조사 → 수의 계약용 확인서 발급 → 수의계약 체결

4. 과제확인 수행절차(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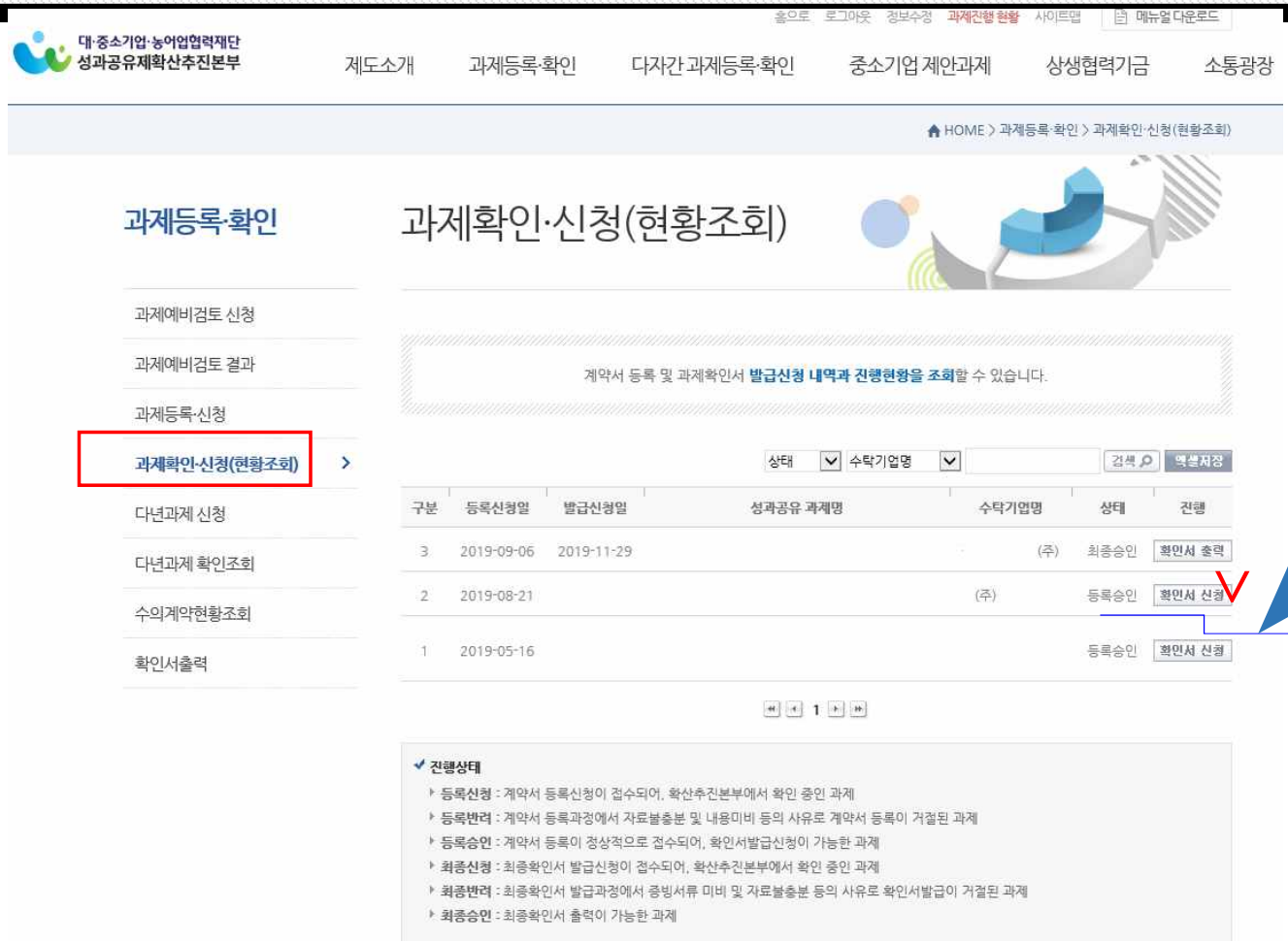

"등록승인" 상태의 과제는

1.목표달성, 2.공동노력, 3.성과공유

상기 사항에 대한 이행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확인서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4. 과제확인 수행절차(3/4)

계약 내용 * 자동입력

일련번호	A2019	상태	등록승인
위탁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탁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성과공유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수의계약여부	성과공유 방식으로 수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만 예를 선택하세요.) ○ 예 ◉ 아니오		
기타 의견			

성과공유 유형 (해당 정보는 심사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서비스용역
대외과제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공유방식1	물량·매출확대

성과공유 공동노력 * 필수입력

위탁노력	노력1	선택하세요
	노력2	선택하세요
수탁노력	노력1	선택하세요
공동노력		천원
성과공유	현금보상	천원
	투자비용보상	천원

위탁성과

유형	선택하세요

수탁성과

유형	☐	시제품(시작품) 구매보상	0 천원
	☐	물량·매출확대	0 천원
	☐	판로확보	0 건
	☐	매출액 공유(수탁->위탁)	0 천원
	☐	현금배분	0 천원
	☐	거래기간연장	0 개월
	☐	지재권 공유	0 건
	☐	기술료납부(수탁->위탁)	0 천원
	☐	단가반영	0 천원
	☐	가산점부여	
	☐	장기계약체결	0 개월
	☐	수의계약	0 천원
	☐	성과귀속	0 천원
	☐	투자비용 보상	0 천원
	☐	기타	

금액의 단위는 **천원** 입니다.

4. 과제확인 수행절차(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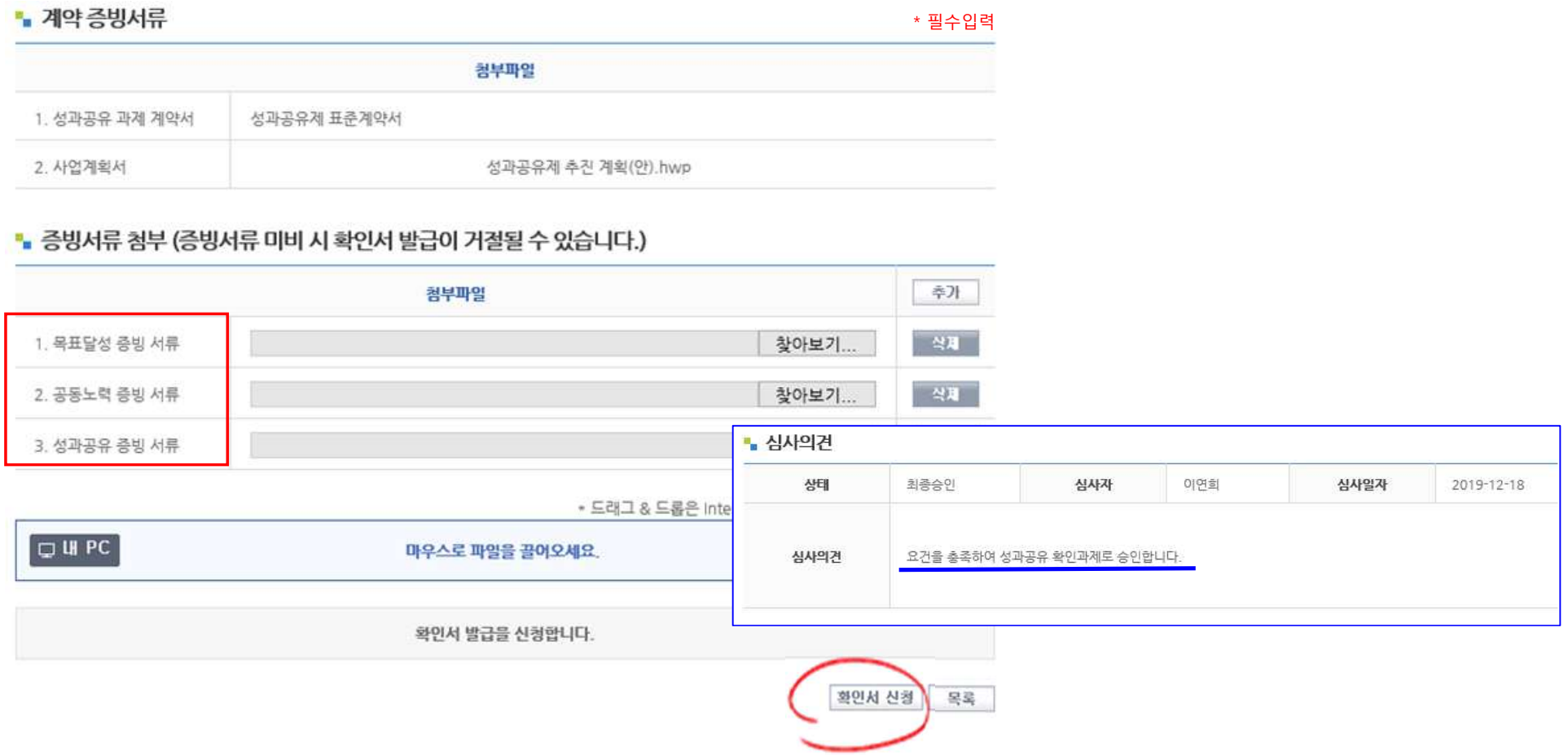

4. 수행보고서(예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과제 수행보고서[요약]

과제정보			
과제명	전기안전관리 위탁 수행을 통한 성과공유		
과제기간	2021. 4. 5. ~ 2022. 7. 31.		
등록기업		협력기업	

수행결과		
항목	계획	실적
과제목표	감전·화재 등 전기재해 Zero화	과제기간 중 **감전·화재 등 전기재해 0건**
공동노력	전기재해 Zero화를 위해 위/수탁기업 상호간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지원 및 지도자문(컨설팅)**	○ 위탁기업: 전기재해 등 안전 분야 교육자료 공유 - **(온라인)** 네이버밴드 운영(공단 안전관리자 운영·관리)을 통한 안전교재, 안전보건사항, 위험성평가 등 제공 * 밴드명: 도로교통공단 수급업체 모임 - **(오프라인)** 매월 초 전기설비 점검 시 사고사례 전파 ○ 수탁기업: 수시 지도 자문(전기설비 보완 및 전기화재 예방안 등)
발생성과	위탁기업: 과제기간 중 **감전·화재 등 전기재해 0건** 수탁기업: 과제목표 달성('21년도 전기재해 발생 건 없음)으로, **차년도('22) '전기설비 안전관리' 계약업체로 선정**	
성과공유	☐ 현금배분 ☑ 물량·매출확대 과제목표 달성('21년도 전기재해 발생 건 없음)으로, **차년도('22) '전기설비 안전관리' 계약업체로 선정**	
변경사항	과제기간 수정(종결일: '22. 12. 31. → '22. 7. 31.)	
기타		

확인신청서양식

과제 정보			
과 제 유 형	☑ 성능개선		
과 제 명	성능 및 정확도 향상		
BENIS번호			
과제목표	성능 및 정확도 향상		
과제기간	2021. 7. 13. ~ 2022. 12. 31. (18개월)		
제출조직		협력기업명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구 분	표준계약서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항		'21년도 성과공유과제 일반형 계획서 제출 (민원부-558(2021.9.)
과제목표		성과공유 표준계약서 등
공동노력 (조직)		2021년도 일반형 성과공유과제 추진계획 보고(민원부-505(2021.8.) 등
공동노력 (협력기업)		월별 점검표(2021년 7월 ~ 2022년 6월)
재무적 성과		세금계산서(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타 성과		
공유일시(재계약일자)		2022. 10. 8.
공유금액(원)		63,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성과공유 과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00. 00. 확인자 : 0000 (인)

4. 목표달성 증빙자료(예시)

결과보고서

성과공유제 결과보고서

과제명 : ooo 제품 개발

과제 내용

과제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3년 8월 31일

과제 달성률 : 100%

과제 산출물

1. OOO 시제품
2. 성능검증평가결과

수탁기업

상 호 :

전 화 :
주 소 :

대 표 :

공문 등 내부 결재 문서

주식회사

수신자
(경유)
제 목 [내부평가] 2022년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실증 결과 알림

1. 문서 50220 (2022.07.20) , -55262 (2022.08.04)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하여, 우리 본부 Test-Bed 지원사업 실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업 체 명 : :
   나. 실증제품 : 차열방수제(19HR제-R)
   다. 실증기간 : '22.08.04 ~ '22.10.03
   라. 결 과 : 양호

붙 임. 혁신기자재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실증결과 1부. 끝.

수신자

	차장	부장	
	부장	차장	직원
시행	-72160 (2022.10.12)	접수	

공인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1. 성 적 서 번 호 :
2. 의 뢰 자
3. 시
4. 시
5. 시
6. 시
   (1)

확인	작성자 성 명

비고 : 1. 이 성적서는 KS Q IE 전체제품에 대한 품
2. 이 성적서는 홍보, 선
3. 이 성적서의 일부만
4. 이 성적서의 진위여

2020년 06월 04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결과문의 : 06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 (02)2102-2707

4. 공동노력 증빙자료(예시)

사진

공동노력 활동

[과제명 : 화재사고 예방]

□ 전기 화재 등 안전 교육 실시

- 전기 화재 안전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별도 증빙 첨부

전기 화재 안전 교육 | 전기 화재 안전 교육

전기 화재 안전 교육 | 전기 화재 안전 교육

회의록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일시	'22. 07. 27(수) 09:00 ~ 10:00
회의장소	
내 용	○ 장 적용시 문제점 및 ○ 획서 및 설계도면 협의 ○ 성 및 편의성 증대방안 ○ 기술지원 및 업무협의 등

▣ 참 석 자

소 속	직위	성 명	서 명	소 속	직위	성 명	서 명

명단

붙임2 교육자명부

○ (부서명)

○ (교육자 명부)

연번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직위	성명	서명
1	직원						
2	직원						
3	직원						
4	직원						
5	직원						
6	직원						
7	직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직위는 팀장/직원으로 구분

4. 성과공유 증빙자료(예시)

(물품, 용역)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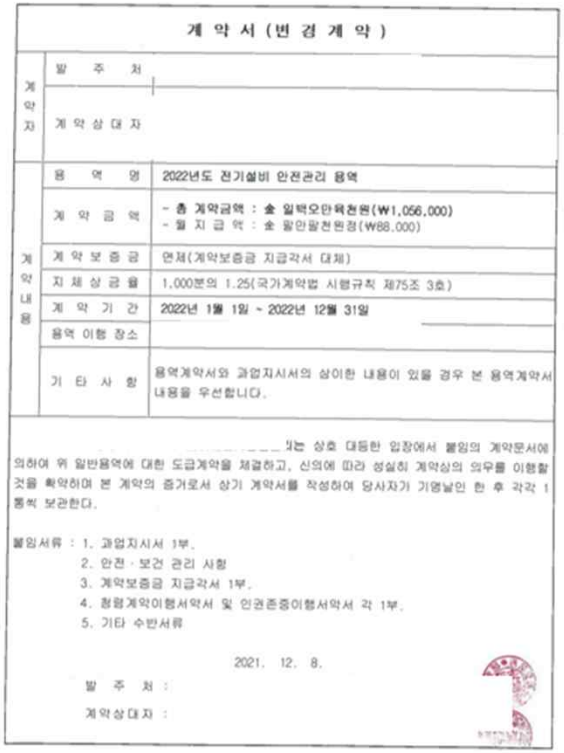

계 약 서 (변 경 계 약)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용 역 명	2022년도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
	계 약 금 액	- 총 계약금액 : 金 일백오만육천원(₩1,056,000) - 월 지 급 액 : 金 일만팔천원정(₩88,000)
	계 약 보 증 금	면제(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1.2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3호)
	계 약 기 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용역 이행 장소	
	기 타 사 항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용역계약서 내용을 우선합니다.

_____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일반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상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과업지시서 1부.
2. 안전·보건 관리 사항
3.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이행서약서 각 1부.
5. 기타 수반서류

2021. 12. 8.

발 주 처 :
계약상대자 :

이체증, 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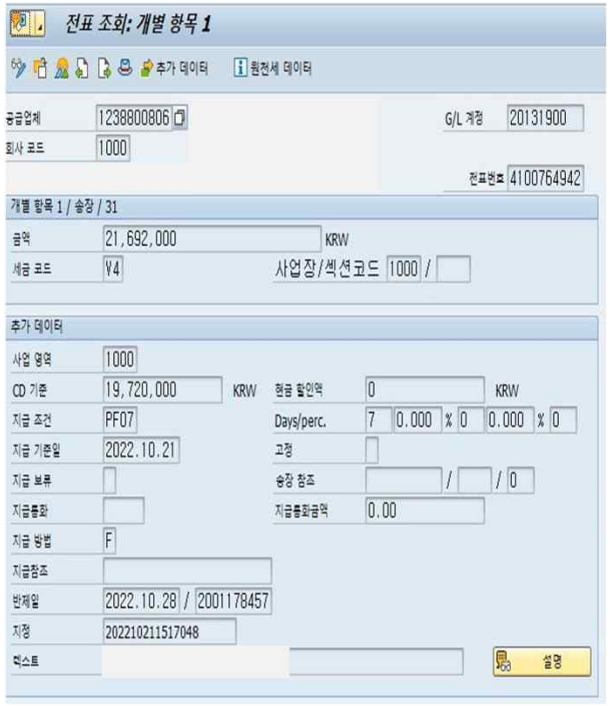

전표 조회: 개별 항목 1

추가 데이터 | 원천세 데이터

공급업체	1238800806	G/L 계정	20131900
회사 코드	1000	전표번호	4100764942

개별 항목 1 / 송장 / 31

금액	21,692,000 KRW		
세금 코드	V4	사업장/섹션코드	1000 /

추가 데이터

사업 영역	1000		
CD 기준	19,720,000 KRW	현금 할인액	0 KRW
지급 조건	PF07	Days/perc.	7 0.000 % 0 0.000 % 0
지급 기준일	2022.10.21	고정	
지급 보류		송장 참조	/ / 0
지급통화		지급통화금액	0.00
지급 방법	F		
지급참조			
반제일	2022.10.28 / 2001178457		
지정	202210211517048		
텍스트			설명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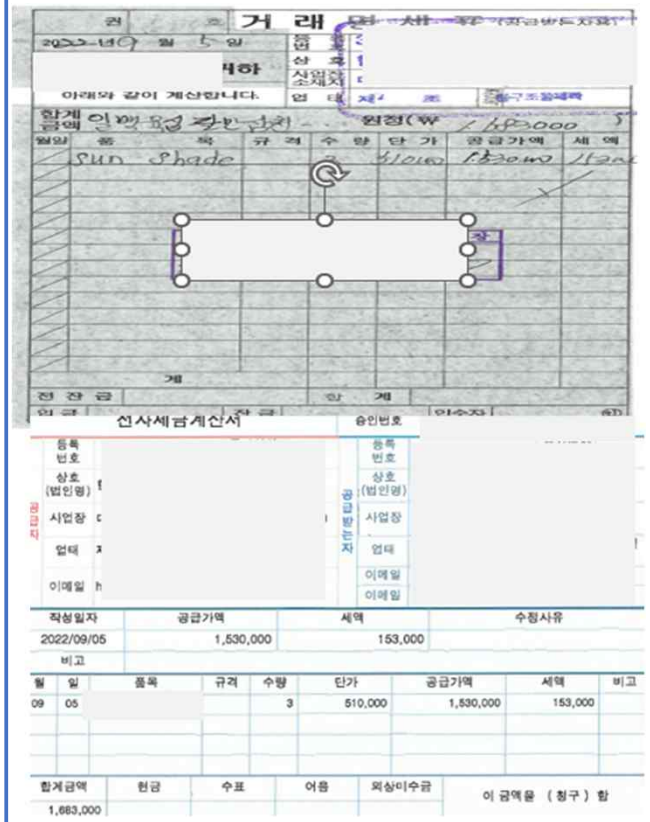

거 래 명 세 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2/09/05	1,530,000	153,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9	05			3	510,000	1,530,000	153,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683,000					

※과제확인서 출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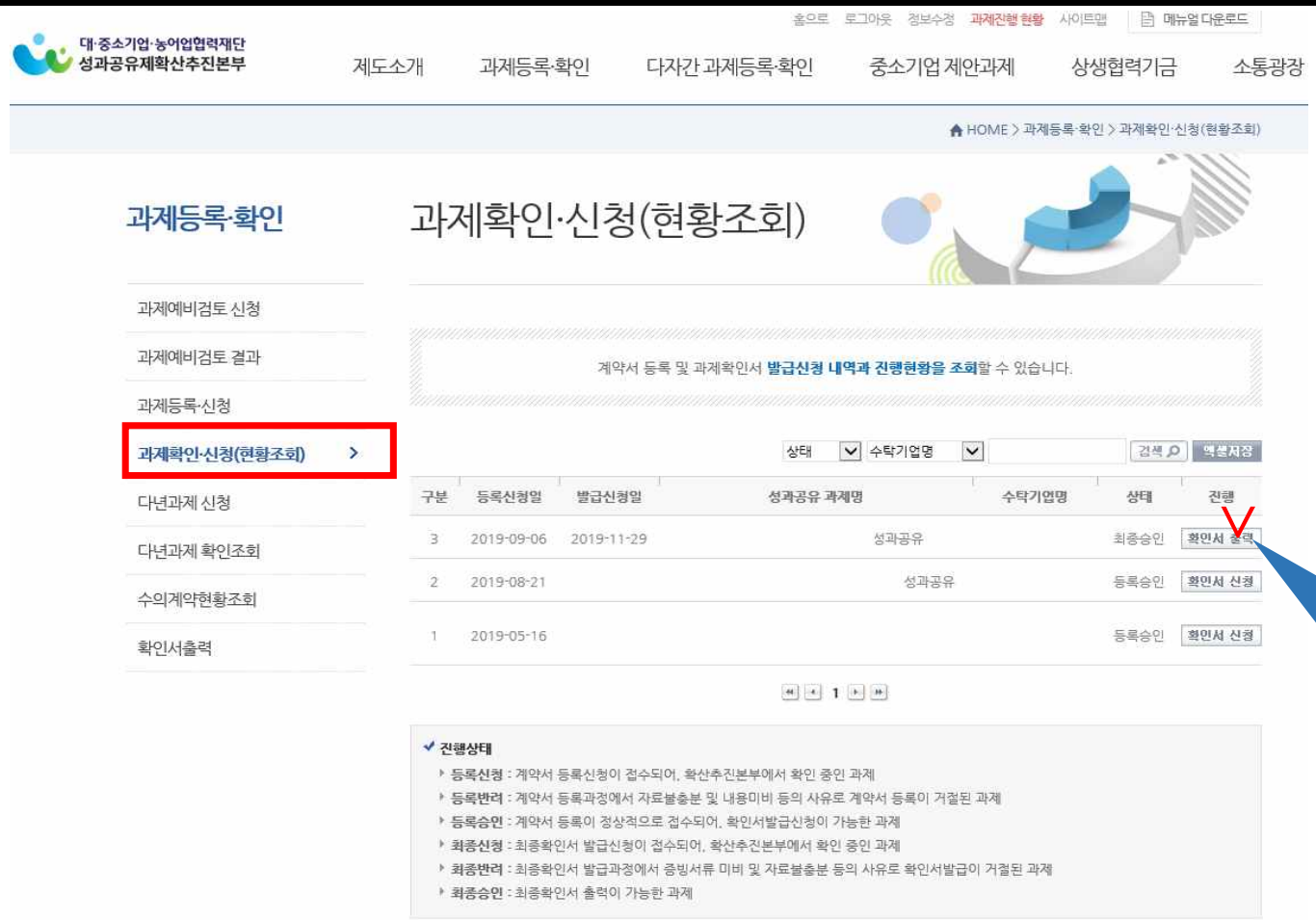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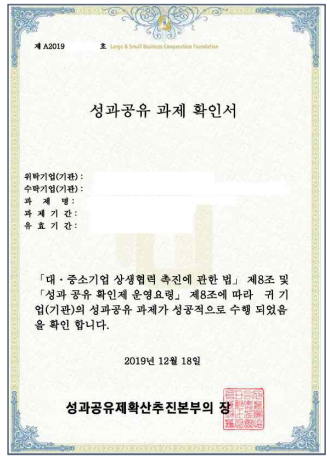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귀 기업(기관)의 성과공유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의 장

← 최종승인 과제의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또는

과제명 클릭하여 들어가서 하단에 최종확인서 출력↓

03 세부 과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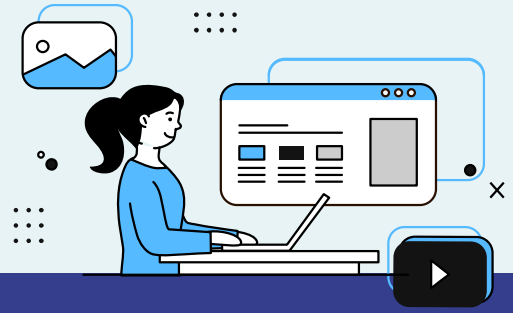

1. 다자간 성과공유제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유형

일반 위탁기업 – 수탁기업 간 1:1 성과공유 계약

기존 성과공유 계약

다자간 위탁기업 – 1차 – 2·3차 협력사 간 단계별 계약을 통합

수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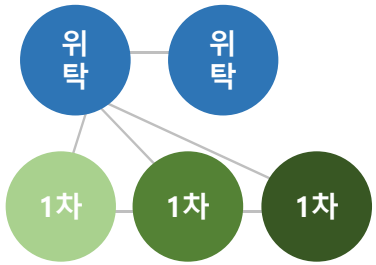

수평형

1. 다자간 성과공유제

수직형과 수평형

수직형

수직형 형태의 거래구조를 가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1차, 2·3차 협력사)이 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역할 분업을 통한 목표 달성 후, 창출된 성과를 공유

수평형

위탁기업과 복수의 수탁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 역할 분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

1. 다자간 성과공유제_ 표준계약서 예시

붙 임 다자간 성과공유제 예시(수직형)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A제품(신제품) 개발

□ 과제기간 : 2023 년 1월 1일부터 ~ 2025 년 12 월 31일까지(36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3 년 1월 1일부터 ~ 2024 년 12월 31일까지(24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5 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1차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2차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위탁-1차-2차)			
정량	A제품 개발	정성	A제품 개발을 통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보
정량	A제품 관련 기술이전을 통한 B부품 개발	정성	

□ 공동노력 : 위탁 · 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과제기획, 총괄 사업관리 개발지원금 및 테스트 지원 등	
(1차 수탁기업명)	제품 개발 수행 과제 수행 및 안전 확보 달성 목표기술의 성능 및 목표 수준 달성 등	
(2차 수탁기업명)	부품 개발 수행 샘플 제작 및 현장 설치	
상생협력기금 활용	□ 활용 □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 현금 배분	□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위탁-1차 수탁기업	개발제품 구매	
	위탁-2차 수탁기업	부품 납품계약 체결	
공유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_____과(와) 수탁기업 1차, 2차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년 1월 1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다년과제 개념 및 운영절차

01 개념

등록한 과제에 대한 성과를 확인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재차 확인과제로 인정

02 운영절차

과제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매년 1회 씩 총 3회에 한하여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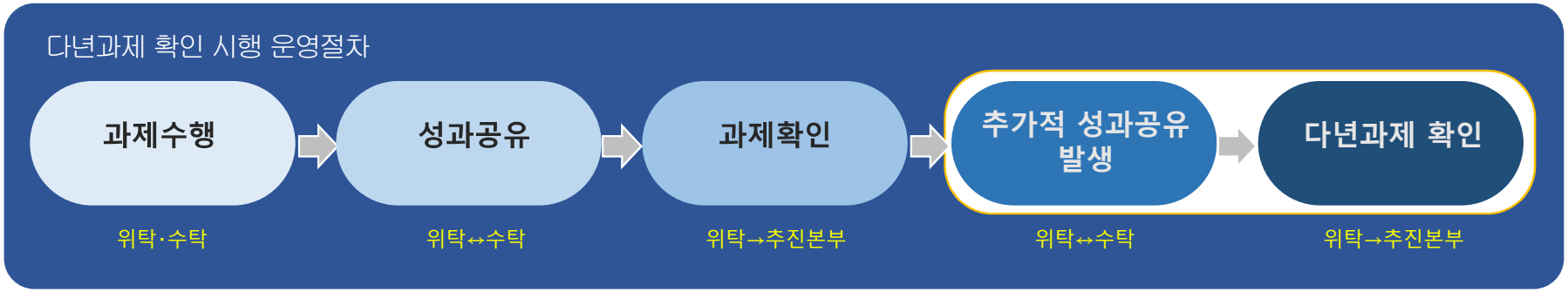

성립조건 및 인정범위

03 성립조건(① 또는 ②)

① 기술개발 과제로서 3개월 이상 개발 및 공동노력 기간이 소요되는 과제

②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과제

04 인정범위(확인실적)

최초 확인심사에서 인정받은 금액과 동등 또는 이상의 추가실적이 발생한 경우, 다년과제 확인신청서와 실적증빙을 제출 시 다년간 실적으로 인정

< 다년과제 인정기준 예시 >

구분	과제등록	과제확인 (최초 1차)	다년간 확인(최초 확인 실적 대비)	
			2차	3차
비율	목표설정	-	100% 이상	100% 이상
예시	실적	1억원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일반과제와 다년과제 운영방법 비교

일반과제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성과공유실적을 확인하여 확인과제 심사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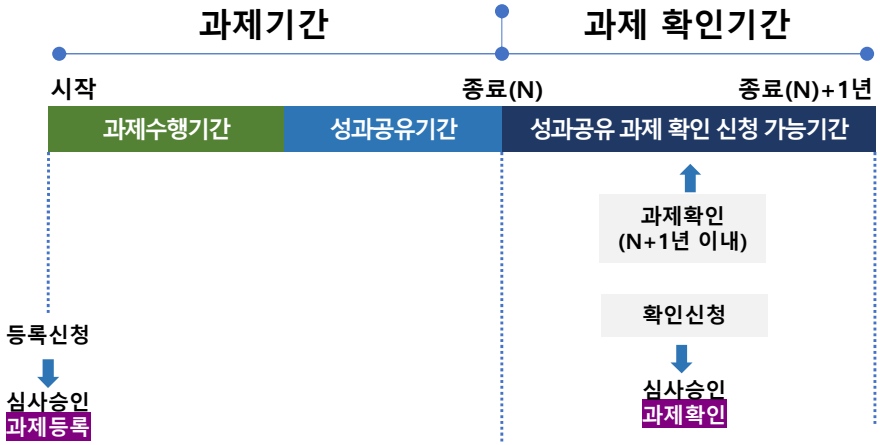

* 과제기간 내에 성과공유가 완료된 경우, 조기에 과제확인 신청가능

다년과제

과제기간 종료이후 3년 이내에 한하여 매년 1회씩 총 3회까지 과제 확인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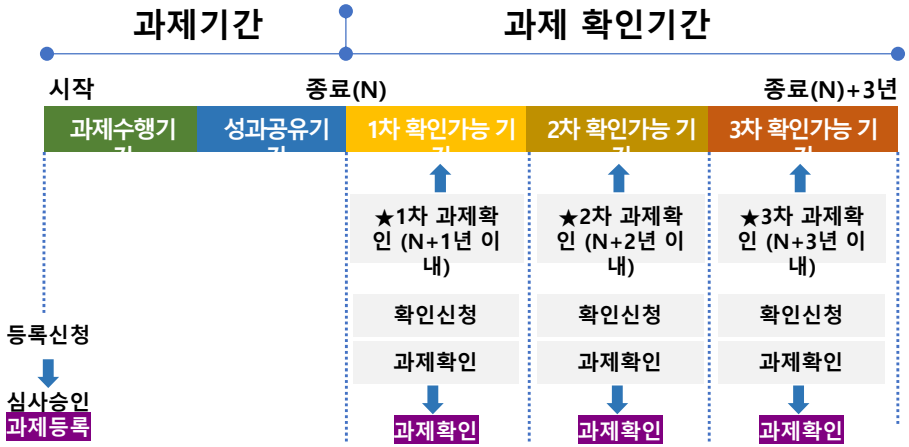

다년과제 추진방법

진행 중 및 종료된 과제

(조건)

①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과제의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다년과제의 조건 및 범위를 충족시키고, 최초 과제 확인 시점보다 최소 100%이상 실적 발생

(신청서류)

다년과제 확인 신청서 및 추가 성과공유 관련 실적 증빙 서류

최초 등록과제

(조건)

① 과제등록 시점까지 진행되지 않은 과제로, 일반 성과공유 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

② 다년성과의 차수 및 추가적 성과는 예상수치로 작성

(신청서류)

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 다년과제 확인 신청서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수의계약용 확인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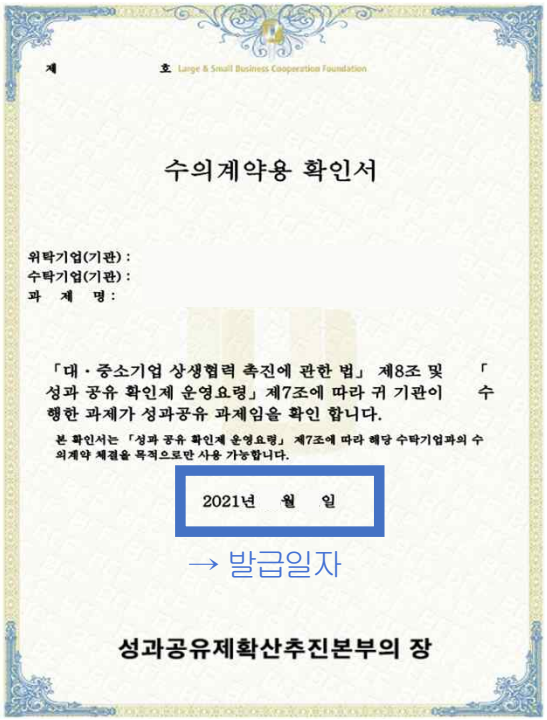

제 호 Large & Small Business Cooperation Foundation

수의계약용 확인서

위탁기업(기관) :
수탁기업(기관) :
과 제 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및 「성과 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귀 기관이 수행한 과제가 성과공유 과제임을 확인 합니다.

본 확인서는 「성과 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수탁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 월 일

→ 발급일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의 장

수의계약용 확인서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서면 또는 현장조사 후 발급되는 확인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통해 발급일자로부터 2년 이내 계약체결 가능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성과공유 수의계약용확인서 발급절차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유의사항

CHECK 1. ☑ **입찰,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였고, 적합한 절차로 과제를 선정하였는가?**

CHECK 2. ☑ **등록기업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성과를 평가하였는가?**

CHECK 3. ☑ **종합관리시스템(benis)에 과제 수행 관련 목표달성, 공동노력, 발생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붙임1 과제 추진실적 양식 및 예시

과제

☐ **과제 추진실적**

No	항 목		관련규정*	제출내용(성과증빙)
1	과제선정	공모		
		검토 결과		
2	사전계약	계약 체결		
3	공동노력	위탁		
		수탁		
4	성과평가	평가 결과		

* ○○○○○『성과공유제 시행기준』

붙임4 과제정보 제공 동의서[안]_수의계약용

과제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동의서

과 제 명			
위탁기업		**담당자**	
수탁기업		**담당자**	

☐ 목적

①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이후 과제 최종 승인을 받은 성과공유제 과제에 대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정보종합망(www.smpp.go.kr)에 과제 정보 제공

② 수의계약용 확인서 관련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기에게 과제 정보 제공

☐ 제공 및 활용 정보

- 성과공유과제 일련번호, 성과공유과제명, 사업계획서의 과제내용, 위·수탁기업명, 기업소재지,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과제상태(최종승인일), 과제 관련 내부 문서 등

☐ 정보 제공 및 활용 기간

- 동의서 작성 시점부터 정보 제공 및 활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제공 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현장실태 및 서면조사 관련 외부전문가 등

* 당사는 위의 목적으로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에 한해 과제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위탁기업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수탁기업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붙임2 확인서 발급신청시 증빙서류 예시

업로드 파일(예시)	구분	내용	내부규정*	재단 검토항목
1.성과공유과제 공모시행	과제공모	성과공유 과제공모	제2장 성과공유제조직관리, 위원회 및 교육훈련 제6조(위원회) 제3장 성과공유제실행 제8조(과제제안)	계약부문 - 과제심의 및 선정 절차 적정성 여부
2.성과공유제 신청서	과제제안	희망 중소기업 신청		
3.성과공유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선정평가	성과공유제 제안과제 선정평가		
4.제안자 발표자료				
5.성과공유제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7.성과공유과제 수행계획서	계약체결	과제 계약체결	제3장 성과공유제 실행 제9조(계약)	
8.성과공유제 계약서				
9.성과공유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과제수행 결과 (공인시험서 등)	제3장 성과공유제 실행 제10조(과제수행) 제4장 성과공유제 평가, 공유 제11조(평가관리)	계약부문 - 과제 계약서에 따른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수행내역) 적정성 여부 성과증빙 -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절차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였는지 여부 -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동노력 (수행내역) 및 성과증빙서류의 확인
10.성과공유과제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보고	성과검증	공통목표 달성 내용 성과검증 (내,외부)		
11.성과공유제 성과검증 (현장)평가실시				
12.성과공유과제 성과검증 (현장)평가 결과보고				
13.성과공유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최종평가	성과달성 여부 심의 의결		
14.최종평가 발표자료				
15.성과공유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탁기업 성과공유제 내부규정(권고안) 기준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관련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사후관리)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0호]

① 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과제

관련 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3. 공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4 성과공유제 FAQ

예비검토는 필수 절차인가요?

A

성과공유제 확인제는 **등록 → 확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검토는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전

성과공유 내용 이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예비신청, 등록신청, 확인신청 과제 모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합니다.

단,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 합니다.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과제로 해야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A

위탁기업의 내부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으며,
확인과제 신청 시 증빙으로 수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을 하시려는 경우는
과제신청 시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과제에 “예”를 체크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 추진본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심사 진행합니다.

계약서 대신 협약서를 제출 가능한가요?

A

등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표준계약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협약서에 과제목표(정량), 과제기간(과제수행■성과공유), 공동노력, 성과공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반드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계약서 양식은 '21.6 개정되었으며, benis 홈페이지-서식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ttps://ben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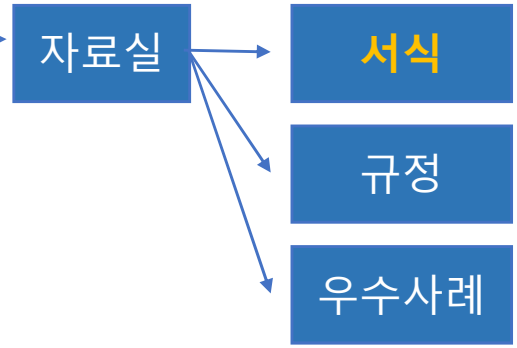

과제목표를 정량, 정성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

정성적인 부분은 필요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량적인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목표(정량 ▮ 정성)는 추후 달성 여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공동노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위·수탁기업이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비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제품 개발, 설계 등 구체적인 각각의

역할에 대해 추후 **최종신청 시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수행기간과 성과공유기간이 중첩되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과제기간(A+B) = 과제수행기간(A) ■ 성과공유기간(B)으로,

추후, 최종신청 시 목표달성, 공동노력, 성과공유가 A+B이내에

이행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목표 미달성 하였으나 성과공유 시 확인승인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확인 심사 시, 목표달성·공동노력·성과공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확인승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 될 경우에는 **과제 수행기간내에 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추진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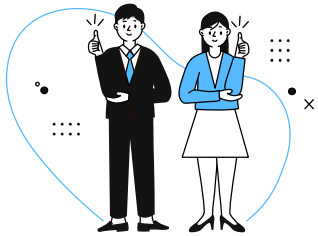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성과공유 확인제 문의처 : 민간 이승훈 차장 (02-368-8793), 김인혜 대리 (02-368-8944), 신선이 대리 (02-368-8971)
공공 장원익 과장 (02-368-8978), 김현아 대리 (02-368-8788)